



제426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 교원의 정년 연장〉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01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3.
3. 회부연월일 : 2025. 3.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공립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와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교수들의 역할이 요구되는바, 연구 성과가 높고 연구 의지가 충분한 인력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허용하는 등 정년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학 교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47조(정년) ①·② (생략) <신설>	제47조(정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며, 「고등교육법」 제14조¹⁾에 따른 교원의 정년만 예외적으로 65세로 규정²⁾되어 있음. 사립대학의 경

-
- 1)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 2)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우 각 대학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년을 정하나, 대부분 「교육공무원법」을 따라 65세로 정하고 있음. 최근 연령별 전임교원 점유율을 보면 50대 이상의 연구인력 비중이 지속적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4년제대학 전임교원의 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구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2019	교원수	6,328	23,072	28,475	15,887	73,762
	점유율	8.6%	31.3%	38.6%	21.5%	100%
2020	교원수	6,746	22,954	28,908	16,205	74,813
	점유율	9.0%	30.7%	38.6%	21.7%	100%
2021	교원수	6,445	22,437	28,831	16,247	73,960
	점유율	8.7%	30.3%	39.0%	22.0%	100%
2022	교원수	6,426	21,992	28,662	16,170	73,250
	점유율	8.8%	30.0%	39.1%	22.1%	100%
2023	교원수	6,580	21,559	28,381	16,023	72,543
	점유율	9.1%	29.7%	39.1%	22.1%	100%

자료 : 2024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한국연구재단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 교원의 정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경우 우수한 연구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고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ReSEA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개정³⁾도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루어진바 있음.

특히, 이공계 석학들의 인재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은 정년연장은 인재 유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⁴⁾에 따르면, 123명(61.5%)이 최근 5년 이내에 해외 국가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바 있으며, 제안을 받은 응답자중 52명(42%)은 제안을 수락해 해외에서 연구 중이거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제안을 받지 않은 77명 중 64명(83%)는 제안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함. 또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연구자 두뇌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것은 정년 후 석학 활용 제도의 미비(163명, 82.5%)였는바, 이공계 석학들에 대한 정년연장은 석학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립대 교원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 교원의 정년연장은 대학원생, 비정규 교수 등의 진출 기회를 축소시킬 우려도 있음. 이를 고려했을 때, 개정안에 따라 대학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신진 연구자의 진출 기회를 최대한 축소시키지 않고, 정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② 정부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이공계 석학 62% “해외서 영입 제안”... 인재 유출 무방비(동아일보, 2025.5.28.)

년이 연장된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이 명시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는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정의⁵⁾를 내리고 있음.

미국의 경우 고용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ADEA)을 통해 정년제를 폐지하고, 40세 이상 근로자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영국은 2011년 평등법(Equality Act) 개정을 통해 65세 정년제를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호주, 뉴질랜드도 대학 교수에 대한 정년을 두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년후 교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성균관대는 종신보장의 테뉴어(tenure) 제도를 도입하여 종신석좌교수를 임명한바 있음.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라는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나, 초·중등학교 교원 등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대학교원·학문분야·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및 갈등 유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의학·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립한밭대 교수평의회, 제주대학교 교수회 등 4개 기관은 교육공무원의 평등성, 학문적 다양성 등을 위해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교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은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위임 규정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군산대학교, 충남대학교 간호대학은 젊은 인력들의 대학 근무 축진이 필요하며, 개정안이 교수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정년 연장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은 지속적 연구환경 보장 등을 위해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